#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염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7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 : 염태영 · 이해식 · 황명선

김준혁 · 김우영 · 백혜련

김영진 · 김남근 · 김승원

권칠승・박 정・박주민

김태년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

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,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,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

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(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국 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2항의 최 고장애물을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며, 사 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제4항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제13조제7항 중 "제10조제5항"을 "제10조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9항 단서 중 "제10조제5항"을 "제10조제6항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         | 제10조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또는 제한) ① · ② (생 략)         | 또는 제한) ① · ② (현행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같음)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| ③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는 제2항의 최고장애물을 실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상으로 산정하며, 사실상 비행</u>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니한다.   |
| <u>③</u> ~ <u>⑤</u> (생 략)  | $\underline{4} \sim \underline{6}$ (현행 제3항부터 제5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까지와 같음)  |
| 제11조(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         | 제11조(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등) ① ~ ③ (생 략)             |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           | <b>4</b>  |
| 항제2호, 제2항 및 <u>제5항</u> 에 따 | <u>제6항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・공작            |   |
| 물・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            |   |
|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            |   |
| 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           |   |

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.

#### ⑤ (생략)

제13조(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7 협의 등) ① ~ ⑥ (생 략)

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(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, 제10조 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)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## ⑧ (생 략)

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
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
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
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다
만,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
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

|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(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 |
| 협의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 |
| 음)                 |
| ⑦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제10조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제6항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⑧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9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제10조제6항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
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 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.

① · ① (생 략)

| ① · ①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|